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간제교원에 대한 회원자격 부여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42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기간제교원에 대한 회원자격 부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4. 7. 29.
3. 회부연월일: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기간제교원에 대한 회원자격 부여

개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회원자격) ① (생략)	제7조의2(회원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1의2.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u>
<u><신설></u>	<u>11의3.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공제회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¹⁾ 1971년 설치됨.

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하여,²⁾ 저축, 보험, 대여 등의 공제제도와 각종 부조금, 복지시설, 문화서비스 등 회원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표 1]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사업

구 분			내 용
공 제 제 도	저 축	장기저축급여	재직 교직원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형 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부를 분할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 제도
		목돈급여	재직 교직원의 여유자금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제도
		퇴직생활급여	퇴직 교직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제도
		법인예탁급여	학교법인 등이 보유한 적립금 등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금형 제도
	보 험	종합복지급여	각종 불의의 사고·질병에 대비한 생명보험
		일반대여	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여제도
	대 여	무이자대여	회원의 보건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대여제도
		복지누리대여	회원이 결혼·출산, 주택구입·임차 시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대여제도
		분할급여대여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
회 원 복 지 서 비 스	각종 부조금		신규·재가입 축하기념품,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등
	회원복지시설		The-K마음쉼, The-K휴스टे이, 무료 법률·세무·노무상담소 등
	The-K행복서비스		영화관람, 공연관람, 콘서트 등

주: 2024.8.31. 기준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공제회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없음

공제회의 회원에 대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됨.

일반회원 중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본인이 원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비공무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에 따라 회원가입이 가능함.

한편, 강사와 같이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은 회원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교직원은 회원가입이 가능함.

[표 2] 공제회 회원 구분 및 자격

구분	회원자격	대상
일반회원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 강사 제외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에 따라 가입 가능	「교육공무원법」 §2③~⑤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해당 기관이 채용한 비공무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 정관에 따라 가입 가능	일반회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 임기만료 퇴직, 50세 이상 퇴직한 사람 등
법인회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에 따라 가입 가능	학교법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법인 등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 중 해당 조항 정리

[표 3] 일반 교직원 관련 공제회 일반회원 가입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
· (제1항)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 -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 (제2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 (제1항단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 (제2항)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에 따라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 - (제1호) 「교육공무원법」 §2③~⑤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해당 기관이 채용한 비공무원 중 <u>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u> - (제2호) 사립학교 사무직원	· (제1항)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 -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u>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u> - (제3호)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직원 * (제1항단서) <u>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은 제외</u> ** (제3항)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u>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교직원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으로 가입 가능</u>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 중 해당 조항 정리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 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원으로,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³⁾ 공무원연금

3)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⁴⁾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채용되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되며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회 일반회원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간제교원의 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간제교원은 7만 6,634명으로 전체교원 50만 8,850명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20.3%), 고등학교(22.5%), 특수학교 등(25.4%)에서 기간제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상회함.

[표 4] 2023년 학교급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등 ¹⁾	합계
정규교원	47,987	182,038	91,505	101,198	9,488	432,216
	(86.3)	(93.3)	(79.7)	(77.5)	(74.6)	(84.9)
기간제교원	7,650	13,049	23,295	29,412	3,228	76,634
	(13.7)	(6.7)	(20.3)	(22.5)	(25.4)	(15.1)
전체교원	55,637	195,087	114,800	130,610	12,716	508,8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특수학교등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

1. 2023년 4월 기준임

2. 괄호 안은 해당 교원이 전체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교원에서 기간제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11.0%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 15.1%를 기록하였으며,

기간제교원의 수도 2019년에는 5만 4,53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7만 6,634명으로 2만 2,095명이 증가하여, 44만 1,965명에서 43만 2,216명으로 9,749명 감소한 정규교원과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5] 최근 5년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정규교원	441,965 (89.0)	440,505 (88.4)	438,865 (87.6)	437,736 (86.2)	432,216 (84.9)	△ 9,749
기간제교원	54,539 (11.0)	57,776 (11.6)	61,994 (12.4)	70,057 (13.8)	76,634 (15.1)	22,095
전체교원	496,504 (100.0)	498,281 (100.0)	500,859 (100.0)	507,793 (100.0)	508,850 (100.0)	12,346

주: 1) 특수학교등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

1. 각 연도 4월 기준임

2. 괄호 안은 해당 교원이 전체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교육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제회의 설치 목적에 ‘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모와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회 가입을 허용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간제교원의 공제회 회원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제회 회원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기존 회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은 일반회원의 회원자격 중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교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 의결 사항으로,⁵⁾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공제제도 및 회원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자격의 변경·확대에 대해 기존 회원들의 동의 및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공제회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회원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2023년 대의원 대상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회원자격 부여에 반대하였고, 2022년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5.9%가 회원자격 부여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간제교원 회원자격 부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유는 공익성 측면 및 공제회 이미지 제고(41.1%), 기간제 교원 증가에 따른 교원 개념변화 및 변동 추이 반영(23.5%) 순으로 높게 나왔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유는 기간제교원이 단기 가입 후 퇴직할 경우 공제회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40.4%), 기간제교사 계약 만료 시 퇴직처리 되어 퇴직급여율 100% 수령(39.6%) 순으로 높게 나옴.

이와 같이 기존 공제회 회원의 의견에는 공제회의 공익적 측면과 기간제교원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회원자격 확대에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자금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제회 회원자격 부여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6] 기간제교원 회원자격 부여 관련 대의원 의견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찬성	반대	합계
응답자	16	46	62
	(25.8)	(74.2)	(100.0)

주: 1. 대의원 대상, 2023.3. 실시

2. 응답인원 중 기권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7] 기간제교원 회원자격 부여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긍정		부정		합계
응답자	17,083 (24.1)		53,839 (75.9)		70,922 (100.0)
응답 사유	• 공익성 측면 및 공제회 이미지 제고	(41.1)	• 자금운용관리: 단기 가입 후 퇴직시 공제회 자금운용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40.4)	
	• 기간제교원 증가에 따른 교원 개념 변화 및 변동 추이 반영	(23.5)	• 장기저축급여: 기간제교원 계약 만료 시 퇴직처리 되어 퇴직급여율 100% 수령	(39.6)	
	• 공제회 회원 수 증가로 회세 확장 가능	(18.0)	• 회원관리: 현 시스템상 단기 근무 비정규직 관리가 쉽지 않음	(16.6)	
	• 공제회 자본규모 증가	(17.4)	• 대여: 현 보증보험정책 상 계약직의 경우 보증대여가 어려움	(3.4)	

주: 1. 장기저축급여 회원 대상, 2022.7.~8. 실시

2. 응답인원 중 미확인 회원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공제회 내 다른 직종 및 다른 공제회 가입대상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입자격을 정하고 있는 「정관」 제4조의2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가입대상이 되는 각 기관에서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 고용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따라서 고용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교원에 대해 일반회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경우, 다른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6)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 ① 공제회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5.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기관에서 고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다른 공제회의 법률 및 정관 등에서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제회 회원자격 부여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유·초·중등 기간제교원은 직접 학생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가 상당하므로 공제회 회원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기존 회원의 70% 이상이 기간제교원의 회원자격 부여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유사 성격의 공제회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유·초·중등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만 회원자격을 부여할 경우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7) [타 직종 공제회의 회원자격 현황]

기관명	가입대상	주요용 형태
경찰공제회	(일반)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경찰관서의 일반직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제회 임직원 (특별) 일반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 후 퇴직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과학기술인 공제회	(일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연구회·대학원대학의 임직원, 특정연구기관·엔지니어링사업자·산업기술연구조합·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임직원, 기술사회 회원·임직원, 이상의 기관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과학기술행정기관 공무원 및 직원 등 (특별) 일반회원 중 퇴직자	
교정공제회	교정업무 담당 공무원, 교정공무원의 신분으로 타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 공제회 임직원	정규직
군인공제회	(일반)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공무원, 한국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전쟁기념사업회·국방전직교육원 임직원, 국방대학교 교수 등, 공제회 임직원 (특별) 일반회원 중 퇴직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	
대한소방 공제회	(일반) 소방공무원, 소방업무 담당 공무원, 공제회 임직원 (특별)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자,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상이 퇴직자 또는 상이 퇴직 후 공상 군경 등급판정을 받은 자 (퇴직) 일반회원 중 퇴직자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일반)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 근무 청원경찰, 공제회 임직원 (특별) 일반회원 중 퇴직자	

자료: 각 공제회 법률 및 정관을 바탕으로 제작됨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공제회는 교육 구성원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나,

기간제교원 가입 시 회원관리가 곤란한 점, 안정적 자산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기간제교원이 얻는 효익이 제한적인 점 및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회의 원활한 기간제교원 회원 관리를 위해서, 자료요청·단체수납과 관련된 법령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